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정 2021. 04.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업의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고업의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에 따른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기준 및 실행방안 등의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업의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CP 실시 책임자의 선임)

CP 실시 책임자는 사내 임원으로 정한다.

제5조(CP 실시책임자)

CP 실시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각 영업 담당자의 CP 실시 상황 및 이행 여부 점검
2. 임직원의 CP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제6조(업무의 독립성 등 보장)

- ① 고업은 CP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CP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③ 고업은 CP 업무 집행의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임직원의 의무)

- 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CP 실시책임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한다.
- ③ CP 실시 책임자가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인 임직원은 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 (자율준수의지 선언)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실천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실시)

- ① CP 실시 책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위험이 높은 직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2.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3. 자율준수 관련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4. 기타 임직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모니터링 실시)

CP 실시 책임자는 고업의 CP 운영현황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 ① 고업의 임직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고업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제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정 요구 등)

- ① CP 실시 책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CP 실시 책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인사담당부서는 제재조치의 결과를 CP 실시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CP 실시 책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 ① CP 실시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 상별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2. 공정거래 교육 이수 우수자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 제안자
4. CP 실시 책임자가 추천하는 자

제14조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 실시 책임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칙) CP 실시 책임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